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이동채
(축협 여신관리부)

1. 의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란 농어민이나 농림수산단체가 농, 축, 어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농, 축, 수협에서 대출받고자 하나 마땅한 부동산 담보물이 없을 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에서 해당 농, 수, 축 협 대출금에 대해 대신 보증을 서주는 공적인 보증제도이다. 즉 농어민의 빚 보증을 대신 서주는 제도이다.

2. 신용보증 업무 체계

각종 축산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경우 대출취급점에서 신용조사 및 심사평점을 실시하여 관리기관(농협중앙회)에 신청하면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 취급점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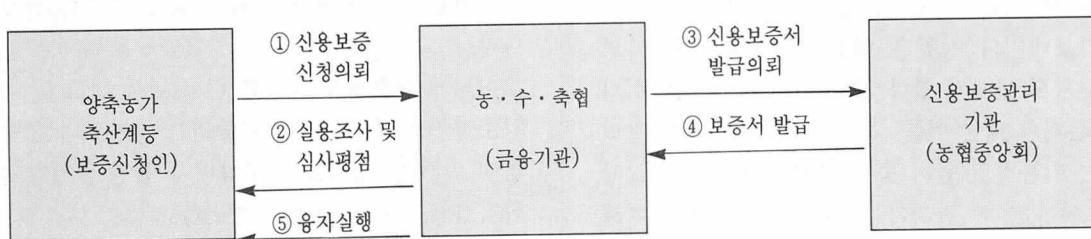
3. 신용보증 대상자

- 농어민, 양축가, 축산계, 산림계, 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
- 농림수산물 유통, 가공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한자에 한함)

※ 기존대출금이 연체중에 있거나, 과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케한 자 및 그 연대 보증인은 제외

4. 보증대상 자금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은 영농, 영어, 양축등을 위한 생산성 자금에 한정되며 학자금 등 가계자금은 신용보증이 되지 않는다.



5. 보증료

- 보증 약정기간 3년 미만 : 보증부대출 금액의 연 0.3%
- 보증 약정기간 3년 이상 : 보증부대출 금액의 연 0.2%

6. 신용보증 한도

신청인에 대한 신용조사(인적사항, 재산현황, 부채현황, 소득상황, 조합거래 상황 등)를 실시한 결과 합계점수에 따라 단계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한다.

- 농어민 양축가 개인 : 최고 2억원

심사 평점	보증 한도
50점 이상~60점 미만	30백만원 이내
60점 이상~70점 미만	50백만원 이내
70점 이상~80점 미만	100백만원 이내
80점 이상~90점 미만	150백만원 이내
90점 이상	2억원 이내

- 단체 및 법인 : 최고 5억원

심사 평점	보증 한도
50점 이상~60점 미만	1억원 이내
60점 이상~70점 미만	2억원 이내
70점 이상~80점 미만	3억원 이내
80점 이상~90점 미만	4억원 이내
90점 이상	5억원 이내

7. 연대 보증인

연대보증은 대출을 받기 위한 연대보증이 아니고 신용보증을 받기 위한 연대보증을 말하며,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결국 보증인이 대신 상환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가. 연대보증인 입보

신용보증금액 30백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야 하며, 법인, 단체는 전 임원을 개인자격으로 입보하여야 한다.

나. 연대보증인 자격기준

보증 금액별	연대보증인 자격기준	연간수입액	재산세 기준
① 30백만원 초과	10백만원 이상	2만원 이상(면단위 이하 지역 : 5천원 이상)	
② 1억원 초과	20백만원 이상	3만원 이상(면단위 이하 지역 : 1만원 이상)	

주 : 1) 연간수입액 기준, 재산세 기준으로 구분하여 이중 한가지를 선택

- 2)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 각자의 합계액이 자격기준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입보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봄.
- 3) 재산세는 최근 1년간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액과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액중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을 제외한 순수재산세

다. 연대보증인 입보 면제

• 개인양축가가 30백만원이내에서 신용보증을 받을 때

- 다음의 경우 보증금액 1억원까지 입보면제
– 전업농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전업 농어가

–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후계자

– 선도 농어가로 선정된 농어가

– 농림수산부의 농정 포상 업무지침에 의거 선정된 농림수산부 장관상 이상 표창등의 포상을 수상한 농어민으로서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새농어민상 수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농협의 새농민상, 수협의 새어업인상, 새양축가상 수상자)